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48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2 |
| 1. ISA 비과세 한도금액 및 납입한도 상향(이소영의원안, 임광현의원안) ..... | 2 |



## I. 개요

###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487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5. 12.
- (3) 회 부 일 : 2025. 5. 13.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와 신혼부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을 증액하며 납입액 한도를 5년간 총 2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ISA 비과세 한도금액 및 납입한도 상향(이소영의원안, 임광현의원안)

| 현 행                                                                                                                                                                                                                                                                              | 개 정 안                                                                                                                                                                                                                                                                                                                                                                                                                                                                                                 |
|----------------------------------------------------------------------------------------------------------------------------------------------------------------------------------------------------------------------------------------------------------------------------------|-------------------------------------------------------------------------------------------------------------------------------------------------------------------------------------------------------------------------------------------------------------------------------------------------------------------------------------------------------------------------------------------------------------------------------------------------------------------------------------------------------|
| <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 특례(제91조의18)</p> <p>○ 특례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로 분리과세</p> <p>○ 비과세 한도금액</p> <p>-일반: 200만원</p> <p>-<u>서민·농어민: 400만원</u></p> <p>○ 의무 계약기간: 3년, 단 계약기간 만료일 전 연장 가능</p> <p>○ 납입한도: 연 2천만원(이월허용),<br/>총한도 1억원</p> | <p>□ 비과세 한도, 납입한도 확대</p> <p>○ (현행과 같음)</p> <p>○ 비과세 한도금액</p> <p>① 이소영의원안</p> <p>-일반: 200만원+(100만원×가입기간 3년 초과 년수)</p> <p>-<u>서민·농어민: 400만원+(100만원×가입기간 3년 초과 년수)</u></p> <p>② 임광현의원안</p> <p>-<u>일반: 500만원</u></p> <p>-<u>서민·농어민·사회초년생(15세-34세): 1천만원</u></p> <p>- <u>신혼부부</u></p> <p><u>6세이하 자녀가 2명이상: 1천만원</u></p> <p><u>6세이하 자녀가 1명: 900만원</u></p> <p><u>자녀가 없는 경우: 800만원</u></p> <p>○ (현행과 같음)</p> <p>○ 납입한도</p> <p>① 이소영의원안: (현행과 같음)</p> <p>② 임광현의원안: <u>연 4천만원(이월허용),</u><br/><u>총한도 2억원</u></p> |

\* 이소영의원안 2025. 2. 26. 발의(의안번호 8454), 임광현의원안 2025. 5. 12. 발의(의안번호 10487)

□ 2건의 개정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소영의원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금액(현행 일반: 200만원, 서민·농어민 400만원)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00만원씩 확대하려는 것이고,

임광현의원안은 비과세 한도금액을 기존 서민·농어민의 경우 1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추가로 사회초년생(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1천만원까지, 신혼부부(혼인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하여는 자녀 수에 따라 800만원에서 1천만원(자녀 없는 신혼부부 800만원, 6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900만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천만원)로 설정하되, 그 외 일반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한도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한도 2억원)으로 상향하고 있음.

既 발의되어 우리위원회 계류 중인 ISA 비과세 및 납입한도 상향하는 내용의 3건 개정안(박대출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이강일의원안)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음.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구 분       |                    | 현 행                   | 박대출,<br>정태호<br>의원안    | 이소영<br>의원안                                      | 임광현<br>의원안                                                   | 이강일<br>의원안       |
|-----------|--------------------|-----------------------|-----------------------|-------------------------------------------------|--------------------------------------------------------------|------------------|
| 비과세<br>한도 | 일반<br>투자자          | <u>200만원</u>          | <u>500만원</u>          | <u>200만원+(100만원×<br/>가입기간<br/>3년 초과<br/>년수)</u> | <u>500만원</u>                                                 | <u>한도<br/>폐지</u> |
|           | 서민<br>농어민          | <u>400만원</u>          | <u>1천만원</u>           | <u>400만원+(100만원×<br/>가입기간<br/>3년 초과<br/>년수)</u> | <u>1천만원</u>                                                  |                  |
|           | 신설<br>(임광현의<br>원안) |                       |                       |                                                 | <u>사회초년생<br/>1천만원</u><br><br><u>신혼부부<br/>800만원~1<br/>천만원</u> |                  |
| 납입<br>한도  | 연간 한도              | <u>2천만원</u><br>(이월허용) | <u>4천만원</u><br>(이월허용) | 2천만원<br>(이월허용)                                  | <u>4천만원</u><br>(이월허용)                                        | 2천만원<br>(이월허용)   |
|           | 총 누적<br>한도         | <u>1억원</u>            | <u>2억원</u>            | 1억원                                             | <u>2억원</u>                                                   | <u>3억원</u>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이하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으로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출시되었음.

ISA는 중개형ISA, 신탁형ISA, 일임형ISA 등 3가지 종류로 구분<sup>1)</sup>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되는데, 중개형ISA와 신탁형ISA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세 유형 모두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방식임.

#### [ISA의 종류]

| 구 분    | 중개형ISA          | 신탁형ISA         | 일임형ISA       |
|--------|-----------------|----------------|--------------|
| 투자가능재산 |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 예금, ETF, 펀드, 등 | ETF, 펀드 등    |
| 투자선택여부 |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 선택 |                | 증권사가 포트폴리오운용 |
| 투자방법   | 간접투자            |                |              |

□ 제도 도입 시기인 2016년부터 ISA 가입의 활성화를 위해 14%의 세율<sup>2)</sup>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였는데,

제도 도입 당시 비과세 한도는 서민이 250만원, 그 밖의 가입자는 200만원이었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음.

이후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서민·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19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2)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경우 6%~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

고,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제도가 영구화되었음.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ISA 제도 및 과세특례 연혁]

| 구 분   | 2015년 개정             | 2017년 개정                 | 2020년 개정 |
|-------|----------------------|--------------------------|----------|
| 가입대상  | 19세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자     |                          | 19세이상인 자 |
| 비과세한도 | 서민 250만원<br>기타 200만원 | 서민·농어민 400만원<br>기타 200만원 |          |
| 일몰기한  | ~2018년               | ~2021년                   | 제도 영구화   |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ISA는 손익의 통산 및 기간의 통산이라는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음. 손익의 통산이란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이익과 손실이 통산되는 것을 말하며, 기간의 통산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일·계약해지일에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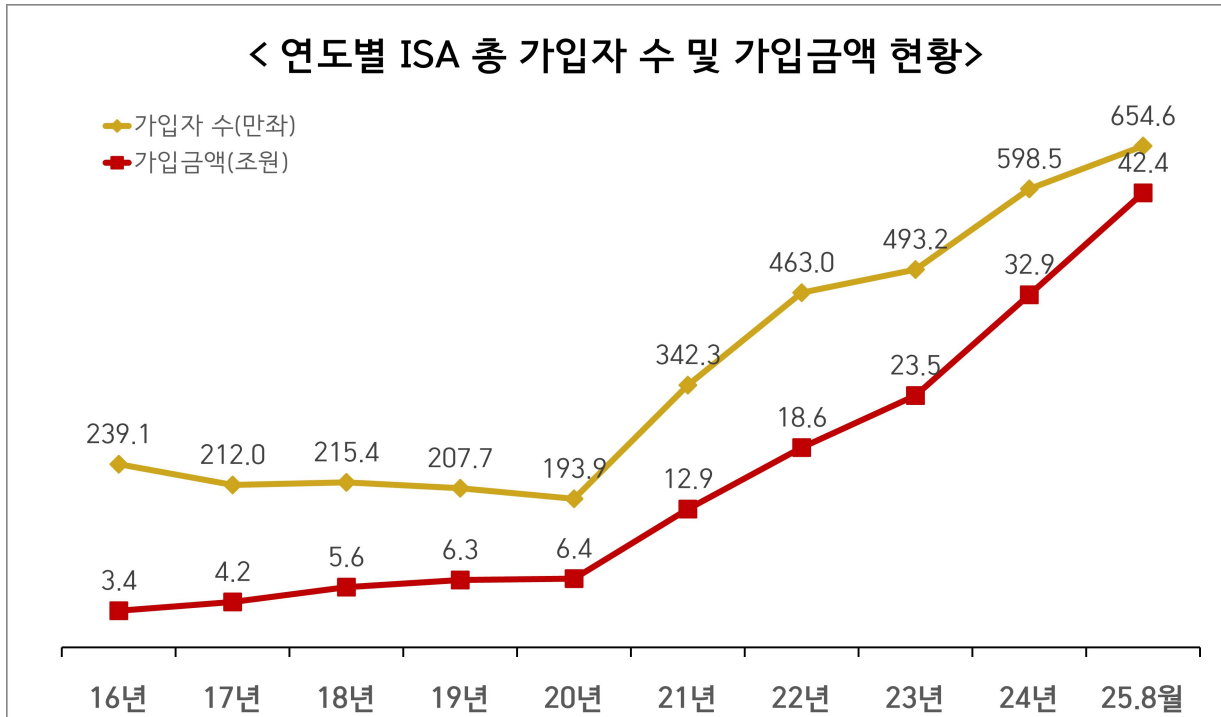
이와 같은 장점에 더해 2021년 중개형 ISA의 도입으로 주식,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5년 8월 기준 가입자 수는 655만명, 가입금액은 42조원에 달함.

3) 김용민, 박동규, 유정호, 「2025 금융상품과 세금」, 조세금융신문

## [연도별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 현황]

(단위: 만좌, 조원)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5.8월 |
|------|-------|-------|-------|-------|-------|-------|-------|-------|-------|--------|
| 가입자수 | 239.1 | 212.0 | 215.4 | 207.7 | 193.9 | 342.3 | 463.0 | 493.2 | 598.5 | 654.6  |
| 가입금액 | 3.4   | 4.2   | 5.6   | 6.3   | 6.4   | 12.9  | 18.6  | 23.5  | 32.9  | 42.4   |



\* 자료: 금융투자협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ISA의 출시 목적인 국민 자산형성 지원기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국민 누구나<sup>4)</sup> 쉽게

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계좌로,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은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8월 기준 가입자 수는 655만명에 달함.

#### [연도별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 현황]

(단위: 만좌)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8월 |
|------------|-------|-------|-------|-------|-------|---------|
| 신규<br>가입자수 | 5.6   | 303.6 | 162.7 | 63.2  | 179.3 | 111.6   |
| 해지인 수      | 19.4  | 155.2 | 42.0  | 33.0  | 74.0  | 55.6    |
| 누적가입자<br>수 | 193.9 | 342.3 | 463.0 | 493.2 | 598.5 | 654.6   |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조정은 ISA를 통한 투자유인을 증가시켜 동 정책금융상품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에 보다 기여할 것이 기대됨.

둘째,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도모할 수 있음.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의 상향조정 또는 폐지를 통해 투자가 증가하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될 것이고 이는 국내 증시의 부양 및 기업 자금조달 환경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음.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 상장기업들의 배당증가와 기업가치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보다 많은 자금이 ISA 계좌를 통한 국내주식으로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ISA 계좌의 납입한도 확대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셋째, 우리나라의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영국 ISA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는 2만 파운드 수준(원화 약 3,522만원)이고 비과세한도는 없으며, 일본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는 360만엔(원화 3,350만원) 수준이고 비과세한도가 따로 설정되지 않고 운영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ISA는 현재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비과세한도는 연간 200만원~400만원인 실정임.

#### [국가별 ISA 제도 비교]

| 구 분       | 우리나라                                                             | 영 국                                            | 일 본 <sup>5)</sup>                            |
|-----------|------------------------------------------------------------------|------------------------------------------------|----------------------------------------------|
| 납입<br>한도  | (現) 연 2천만원                                                       | 연 2만 파운드<br>(원화 약 3,522만원)                     | 연 360만엔<br>(원화 3,350만원)                      |
| 비과세<br>한도 | <일반투자형 ISA><br>(現) 200(서민형<br>400)만원→<br>(改) 500(서민형<br>1,000)만원 | 없 음                                            | 없 음                                          |
| 편입<br>자산  | 예·적금, 채권, 주식,<br>펀드, 파생증권 등                                      | (예금형)<br>예·적금, MMF 등<br>(주식형)<br>주식, 펀드, 사채·국채 | 주식, 상장지수펀드,<br>상장지수증권,<br>상장리츠 등<br>(예·적금 X) |

자료: 기획재정부

넷째, 이소영의원안의 경우 비과세 혜택 향유를 위한 가입해지 유인을 완화함으로써 목돈의 장기간 저축·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효

5)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24년부터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NISA)의 납입한도 등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음.

일본의 ISA 세제지원 확대 주요내용 (新NISA, '24.1월 시행)

- 年 납입한도 : 일반형(現성장형) 120만엔 → 240만엔 / 적립형 40만엔 → 120만엔
- 총 납입한도 : 일반형(現성장형) 600만엔 → 1,200만엔 / 적립형 800만엔 → 1,800만엔
- 중복가입여부 : 일반형·적립형 중복가입 불가 → 성장형·적립형 중복가입 가능

\* 적립형은 적립식 펀드만 편입 가능, 일반형(現성장형)은 주식, ETF, 리츠 주식형펀드 등 편입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과를 기대할 수 있음.

비과세 한도액만큼 수익이 발생한 가입자의 경우 계좌를 연장하기 보다는 해지 후에 재가입할 유인이 있을 수 있음. 이는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고정(일반: 200만원, 서민·농어민 400만원)되어 있어 연장하기보다는 해지 후 재가입하여 새로이 설정된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기 때문임.

다만, ISA 계좌는 가입 후 1년차에는 2천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고, 매년 납입한도가 2천만원 씩 증가하여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sup>6)</sup>되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납입한도는 다시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목돈의 장기투자가 제한될 수 있음.

가입기간에 따라 비과세한도액을 확대하는 이소영의원안은 이와 같은 해지 유인을 완화하고 장기간 계좌를 유지할수록 비과세혜택이 커져 목돈의 장기 저축·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섯째, 임광현의원안은 내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가 있음.

2022년 기준 청년가구와 신혼부부가구의 자가점유율은 각각 14.6%, 46.4%로 일반가구(57.5%)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6)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023년도 가구 유형별 자가점유율 비교]

| 구 분   | 청년가구  | 신혼부부가구 | 고령가구  | 일반가구  |
|-------|-------|--------|-------|-------|
| 자가점유율 | 14.6% | 46.4%  | 75.7% | 57.4% |

주: 자가점유율은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고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신혼부부가구는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 고령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를 지칭함  
 자료: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2024. 12. 27.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현재의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인원 및 비중을 감안할 때, 한도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8월 기준 ISA에 가입한 1계좌 당 평균 투자금액은 647만원이고, 누적 투자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수는 약 5만계좌로 전체의 0.7%에 불과하여, 현재 ISA의 납입한도까지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개정안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ISA 가입자 및 투자현황]

(2025. 8월말 기준)

| 구 분                | 신탁형     | 일임형    | 중개형     | 합 계     |
|--------------------|---------|--------|---------|---------|
| 가입계좌(만좌, A)        | 92.0    | 12.5   | 550.0   | 654.6   |
| 전체 투자금액(억원, B)     | 154,402 | 11,053 | 258,365 | 423,820 |
| 1계좌당 투자금액(만원, B/A) | 1,678   | 885    | 470     | 647     |

자료: 금융투자협회

### [투자금액 수준별 인원]

(2025. 8월말 기준)

| 구 분         | 계좌수(만좌) | 비중     |
|-------------|---------|--------|
| 1만원 이하      | 377     | 57.5%  |
| 1만원 ~ 10만원  | 28      | 4.3%   |
| 10만원 ~ 3백만원 | 72      | 11.0%  |
| 3백만원 ~ 5백만원 | 18      | 2.8%   |
| 5백만원 ~ 1천만원 | 31      | 4.7%   |
| 1천만원 ~ 2천만원 | 66      | 10.1%  |
| 2천만원 ~ 4천만원 | 37      | 5.7%   |
| 4천만원 ~ 6천만원 | 14      | 2.1%   |
| 6천만원 ~ 8천만원 | 6       | 1.0%   |
| 8천만원 초과     | 5       | 0.7%   |
| 합계          | 655     | 100.0% |

자료: 금융투자협회

둘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의 상향 등의 혜택은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다 집중되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현재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가 적용되는 계좌의 수 및 비중이 크지 않고 계좌당 평균 투자금액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 상향 또는 폐지에 따른 감세 혜택은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 가계의 경우 저축이나 자산 구입,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흑자액<sup>7)</sup>이 없고, 2분위~4분위 가계의 경우도 현행의 납입한도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2025. 2/4)]

(단위: 천원)

| 구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 소 득                  | 1,194 | 2,808 | 4,317 | 6,260 | 10,743 |
| 가계지출                 | 1,480 | 2,337 | 3,310 | 4,829 | 7,425  |
| 소비지출                 | 1,304 | 1,900 | 2,496 | 3,536 | 4,943  |
| 비소비지출                | 176   | 437   | 814   | 1,293 | 2,481  |
| 처분가능소득 <sup>1)</sup> | 1,018 | 2,371 | 3,503 | 4,967 | 8,261  |
| 흑자액 <sup>2)</sup>    | -286  | 471   | 1,007 | 1,431 | 3,318  |

주: 1) 처분가능소득 = 소득-비소비지출 2)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통계청, 2025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2025. 8. 28.

문 의 처

02)6788-5161

7)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저축이나 자산 구입,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통계청